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(치안감 1명, 총경 1명, 총경 또는 4급 1명, 경정 4명, 경감 1명, 경위 4명, 3·4급 또는 총경 1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○ ○ ○ ○ 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운영지원과·디지털정부혁신실·조직국·경찰국·지방행정국·자치분권국·균형발전지원국·지방재정경제실”을 “운영지원과·디지털정부혁신실·조직국·지방행정국·자치분권국·균형발전지원국·지방재정경제실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4조의2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9조제2항 후단 중 “115명”을 “11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8명(치안감 1명, 총경 2명, 경정 8명, 경감 3명, 경위 4명)”을 “6명(경정 4명, 경감 2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48”을 “1,635”로, 일반직 계 “1,606”을 “1,605”로 하고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다음에 “3급 또는 4급 이하 1,536”을 신설하며, “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1,537”을 삭제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25”를 “13”으로 하며, “치안감 1”을 삭제하고, 경찰공무원 계 13 다음에 “경정 이하 13”을 신설하며, “총경 또는 4급 이하 24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(생 략) ② 행정안전부에 <u>운영지원과 ·</u> <u>디지털정부혁신실 · 조직국 · 경</u> <u>찰국 · 지방행정국 · 자치분권국</u> <u>· 균형발전지원국 · 지방재정경</u> <u>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</u> <u>다.</u> ③ (생 략) 제13조의2(경찰국) ① 국장은 <u>치</u> <u>안감으로 보한다.</u>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<u>다.</u> 1.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제4항 <u>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</u> <u>찰청장에 대한 지휘 · 감독에</u> <u>관한 사항</u> 2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<u>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</u> <u>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</u> <u>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</u> <u>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</u> <u>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</u> <u>사항</u> 3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	제4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운영지원과 ·</u> <u>디지털정부혁신실 · 조직국 · 지</u> <u>방행정국 · 자치분권국 · 균형발</u> <u>전지원국 · 지방재정경제실 ---</u> 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(附議)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</u> 4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,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(자치분권국) ①·② (생략)	제14조의2(자치분권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7. ~ 26. (생략)

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115명을 상한으로 하고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2명(5급 2명)은 농림축산식품부, 5명(5급 5명)

③ _____
_____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 한 사항

7. ~ 26.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_____ . _____

_____ 114명 _____

③ _____

은 산업통상자원부, 2명(5급 2명)은 보건복지부, 5명(5급 5명)은 환경부, 2명(5급 2명)은 고용노동부, 6명(5급 6명)은 국토교통부, 2명(5급 2명)은 법제처, 1명(5급 1명)은 국세청, <u>18명(치안감 1명, 총경 2명, 경정 8명, 경감 3명, 경위 4명)</u> 은 경찰청, 7명(소방령 5명, 소방경 1명, 소방위 1명)은 소방청, 1명(5급 1명)은 산림청, 4명(5급 4명)은 기상청, 7명(경정 4명, 경감 1명, 경위 2명)은 해양경찰청, 1명(5급 1명)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명(경정 4명, 경감 2명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648</u>	<u>1,635</u>	-1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606</u>	<u>1,605</u>	-1
·	·	·	
·	·	·	
<u>3급 또는 4급 이하</u>	<u><신 설></u>	<u>1,536</u>	+1,536
<u>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</u>	<u>1,537</u>	<u><삭 제></u>	-1,537
·	·	·	
·	·	·	
경찰공무원 계	<u>25</u>	<u>13</u>	-12
<u>치안감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총경 또는 4급 이하</u>	<u>24</u>	<u><삭 제></u>	-24
<u>경정 이하</u>	<u><신 설></u>	<u>13</u>	+13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7